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보도	배포시부터 보도	배포	2016.12.16.(금
----	----------	----	---------------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하주식 과장(02-2100-2610)	책 임 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영욱 판사(02-3480-1368)
담 당 자	최치연 사무관(02-2100-2611) 전동연 사무관(02-2100-2614)	담 당 자	김삼규 사무관(02-3480-1349)

제 목: 금융위원회-법원행정처 간 MOU 체결로 서민의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부담이 낮아집니다.

- 서민의 개인회생·파산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 MOU 체결로 채무조정 Fast-Track을 전국으로 확대
- ◈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 단축 및 소요비용(약 200만원) 절감
- ◈ 채무조정 제도 관련 개선방향을 지속 논의할 수 있는 場 마련

1 행사 개요

- □ '16.12.16(금),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 * 공적채무조정 :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사적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Fast-Track)'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Fast-Track 기대효과 〉

-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 단축(최장 9개월→최소 3개월) 가능
- **❷ 소요비용**(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 **절감** 가능
- ❸ 신용상담보고서 활용 등으로 신청서류 부담 경감 가능

◀ 행사 개요 ▶

■ 일시: '16.12.16.(금) 15:00~15:30

■ 장소: 법원행정처

■ 참석자 : 금융위원장, 법원행정처장, 신용회복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

■ 주요내용

O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O Fast-Track 운영실적 확인 및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 논의

2 업무협약(MOU) 주요내용

- ① 양 기관은 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지원
 -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서울·부산· 광주·의정부·대전)의 관할지역에서만 지원중
- ②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 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 및 업무연계 지원
- ③ 공·사 채무조정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채널 마련

3 기관장 인사말씀 요지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원행정처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 서민의 **공적채무조정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Fast-Track이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법원의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 제도의 개선방향을
 양 기관이 논의할 수 있는 場이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긴급자금대출^{*} 한도 확대 (500만원→700만원) 등 공적채무조정 이용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지원, 법률지원 및 신용교육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힘
 - * 개인회생 인가자로 상환을 완료하거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생계·운영·대환 또는 학자금 목적으로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 가능(연 4% 이내)

-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금융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 개인회생·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 채무자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개인도산절차에의 **접근성이 강화**되며,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조사 결과를 심리에 적극 활용하고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해집과 아울러,
- 서울희생법원 설치 이후 개인 및 기업 도산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선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별첨>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참고1. Fast-Track 개요 및 운영실적

참고2. 개인 채무조정 제도 비교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g.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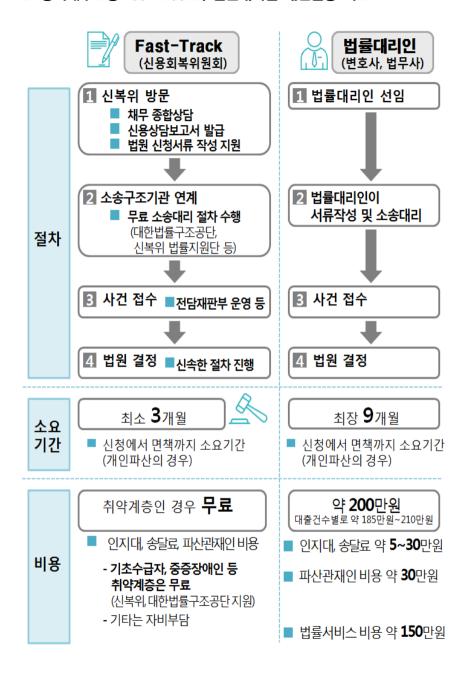
참고1

Fast-Track 개요 및 운영실적

1. Fast-Track 개요

-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진행이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을 지원하여 진행기가을 단축하고 소요비용을 경감하는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을 통해 사적채무조정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내역이 포함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워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서류 작성이 완료된 채무자에게 무료 법률구조 절차를 진행
- (법원) 신용상담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 운영 등을 통한 신속한 절차 진행
- ☐ Fast-Track의 기대효과
- **1**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 단축(최장 9개월→최소 3개월) 가능
- ❷ 소요비용(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 절감 가능
 - * Fast-Track 절차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 비용·인지대·송달료(취약계층인 경우)을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
- ❸ 신용상담보고서 활용 등으로 신청서류 부담 경감 가능
- □ Fast-Track의 진행경과
- '13.5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증앙지방법원의 연계**를 통해 Fast-Track을 시범 실시
- '16.11월까지 **총 5개 지방법원 관할지역***에서 **Fast-Track 실시중*** 서울, 부산('15.6월), 광주('15.11월), 의정부('16.8월), 대전('16.11월)

2. 공적채무조정 Fast-Track과 법률대리인 개별신청 비교



3. Fast-Track 운영실적

- □ '16.1~11월중 신용회복위원회는 아래처럼 개인회생·파산 연계 지원
- Fast-Track 실시지역에서 1,269명의 서류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830명이 Fast-Track을 통해 법원에 사건 접수
 - * Fast-Track 미실시지역에서는 서류 작성만 지원하고 채무자가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법원에 접수토록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지원실적 (단위:명) >

	상담	서류 작성 지원	Fast-Track 법원 신청
Fast-Track 실시지역 (5개 지방법원 관할)	3,883	1,269	830
미실시지역 (9개 지방법원 관할)	3,041	939	_
계	6,924	2,208	830

4. 공적채무조정 이용자 지원방안

- □ (법률지원단 확충) Fast-Track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회복 위원회의 법률지원단을 확충하여 서비스의 질 제고
 - * 법원 사건접수, 신청서류 검토·보완, 접수 후 보정서 작성 등
- □ (비용 지원)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인 경우 지속적으로 공적채무조정 진행 무료 지원
- 카드사 기부금(1억원)을 활용하여 '17년중 최대 500명 지원 추진 ('16.4~11월중 186명 지원)
- □ (긴급자금대출) 개인회생 성실상환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자금대출* 하도 확대(500만원→700만원)
 - * 개인회생 인가자로 상환을 완료하거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생계·운영·대환 또는 학자금 목적으로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 가능(연 4% 이내)
- □ (신용교육) 개인희생·파산 신청자에게 신용도·재무관리 방법, 개인희생·파산 관련 유의사항 등 관련 신용교육 실시
- □ (서류제출 간소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정보제공 동의시 행정 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서류(약 25종)를 일괄 출력 가능(*17.1월)

참고2

개인 채무조정 제도 비교

구 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운영 주체	법원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시행 시기	′04.9월	′62.1월	′02.10월	′09.4월
대상 채무자	개인채무자 (연체일수와 무관)	개인채무자 (연체일수와 무관)	연체일수 90일 이상 인 개인채무자	연체일수 31일~89일 인 개인 채무자
대상 채권	제한 無 (금융회사 채무 및 사채 포함)	제한 無 (금융회사 채무 및 사채 포함)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보유채권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보유채권
채무 조정 신청 채무 범위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제한 無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채무 조정 수준	5년간 가용소득으로 상환 후 잔여채무 면책	전액 면책 (비면책채권 제외)	이자: 전액감면 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 초대33%~ 60%까지 감면 (무담보채무) 최장 10년이내 상환 (담보채무) 최장 20년이내 상환	이자: 최대 50%라면 연체이자: 전액감면 (무담보채무) 최장 10년이내 상환 (담보채무) 최장 20년이내 상환
보증인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연체 정보 해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정보 해제	면책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 해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 해제	해당사항 없음